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정보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 제외〉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2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정보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 제외(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 ...	2
※참고: 부처별 수정의견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재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14.

다. 회 부 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하며, 이는 국가나 제3자의 가공 없이 제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가능함.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향상은 민주 사회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함.

우리 사회가 북한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성숙도를 이미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는 것임.

이에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대북·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

Ⅲ. 검토의견

1. 불법정보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 제외(안 제44조의7제1항 제8호)

가. 개정안 요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법정보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중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외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u>정보</u>	8. ----- ----- <u>정보(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은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으며¹⁾, 제8호는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된 각호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별법상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또한 국보법에 따라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임.
-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북한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민적 성숙도를 이미 갖추었음을 감안하여, 불법정보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북·통일 인식을 제고하려 하는 취지로 그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법률의 명확성 원칙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는 북한 관련 정보는 불법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북한 관련 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불법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지 수범자인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움.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북한 관련 정보라는 문언 그 자체는 해당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가 생산·제공하는 북한 관련 정보도 포함할 수 있음.

○ 즉, 국보법상 금지되는 찬양·고무·선전 등의 행위²⁾도 포함된

2)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고 해석될 경우, 국보법상 처벌 행위인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가 아니어서 정부가 그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 또한,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서 단서를 두더라도 여전히 제9호에 포섭될 수 있어 상호 모순·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의 개념을 보다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넘어 반국가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넓혀 북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북한 관련 정보’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수용’ 의견을 제출함.
- 통일부는 국민의 알권리 제고 및 대북·통일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나, 개방 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외 친북 단체(개인)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까지 포함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되지 않도록 ‘북한 관련 정보’를 ‘북한이 직접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 정보란 ‘단순 북한 관련 정보’가 아닌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땅히 유통이 금지되어야 하는 불법정보’로 한정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국가정보원은 자국민의 북한 이해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북한 관련 정보’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개정안대로 시행하면 북한 체제를 선전·선동하는 게시글이 국보법 제7조로 처벌되었음에도 관련 글이 차단·삭제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북한 관련 정보’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8

※참고: 부처별 수정의견

통일부 의견 조희 결과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북한이 직접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에 공감 * (국정과제) 117-4.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지시사항)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12.19.) ○ 남북간 군사·경제력 격차 및 우리 사회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접속 차단 해제는 체제 자신감에 기반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 - 이는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제고에 기여하고, 건전한 공론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대북·통일 인식 및 정책 참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다만,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라는 정책 추진 목적을 고려해 개방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바, - 국내의 친북 단체(개인)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북한 관련 정보’를 ‘북한이 직접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함. 【참 고】 ○ 「정보통신망법」은 법문상 ‘인터넷 사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사이트’를 ‘정보’의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 판례는 웹사이트 그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 (2015.3.26. 대법원 2012두26432)

방미심위 의견 조회 결과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중검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로서, ‘단순 북한 관련 정보’가 아닌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땅히 유통이 금지되어야 하는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그 외,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국가 차원에서의 북한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과 관련하여,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국정원 의견 조회 결과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u>정보(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u>	(현행과 같음)	○ 북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방향에는 공감 ○ 그러나 현행 법률로도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유지 필요 ① 현행 법률은 모든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u>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u>’만을 금지 ② 개정안의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이 모호해 해당 규정만으로는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알기 힘들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경찰청 의견 조희 결과

□ 검토 의견: 수정 의견

개정안	경찰청 수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_____ _____ 1. ~ 7. (현행과 같음) 8 _____ ----- <u>(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협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u>

- 정보 접근권 허용범위는 입법적 결단 사안이며,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 대북·통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개정안대로 시행시 북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북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선전·선동하는 게시글에 대해 국보법 7조(찬양·고무)로 처벌되더라도 관련 글은 차단·삭제하는 조치가 불가하게 되는 결과 초래 가능
- 따라서, 불법정보에서 제외되는 ‘북한 관련 정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위임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보완 규정 필요